

환경포럼

ENVIRONMENT
FORUM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4년 신기후체제 협상결과 및 2015년 협상전략

- I. 신기후체제(Post-2020) 협상 개요
- II. 2014년 기후변화 협상 결과
- III. 제20차 당사국총회 시사점 및 2015년 협상전략 제언



VOL.19 • NO.1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0년 이후에 기후변화대응 체계를 수립을 위해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한 협상이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이하 INDCs)의 쟁점 사항인 기여의 범위, 제출시기, 차별화, 구조 및 주기,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제출범위, 제출시기, 사전협의와 관련된 부분을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명시함으로써 합의하였다. INDCs와 함께 2015 합의의 중요한 요소인 감축 관련 쟁점사항(감축유형이나 회계 규정 차별화, 감축기여 주기, 장기목표 설정, 감축기여 조건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장이 비공식문서(Non-paper)를 배포하였고 이를 2015년에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제20차 당사국총회는 2015년에 INDCs를 모든 당사국이 제출하는 데 합의해서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했고 신기후체제에 미국과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만 INDCs가 각 당사국의 야심찬 기여를 유도하는 효과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INDCs에 대한 논의로 인해 2015 합의의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서 2015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5년 협상과 관련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INDCs 제출 시기 관련 대응, 자체적 차별화의 구체화, 감축기여 후퇴금지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장기 목표로 탄소예산의 총량적 활용을 제언하였다.

부연구위원 이상윤

정책연구본부 기후대기연구실
sylee@kei.re.kr

전문연구원 김이진

정책연구본부 기후대기연구실
ljkim@kei.re.kr

I. 신기후체제(Post-2020) 협상 개요

03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이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0년 이후 기후 변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새로운 체제를 신기후체제(Post-2020)라고 명명하고 신기후체제의 설계를 전담할 특별작업반 설치를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하였다. 하지만 신기후체제는 2011년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범지구적 기후변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인 발리 로드맵(Bali Roadmap) 채택하였고 이것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applicable to all) 신기후체제의 모태가 된 것이다. 또한 발리행동계획(Bail Action Plan)을 통해 공유비전, 감축행동 강화, 적응활동 강화, 기술개발 및 이전 활성화, 재정지원 및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협상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감축 이외에 개도국의 관심사인 적응, 재원, 기술 등의 다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초석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는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거둔 당사국총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의 연장 합의에 실패하여 코펜하겐 결정문(agreement)이 아닌 합의문(accord)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제15차 당사국총회는 실패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을 포함해 약 100여 개 당사국들이 2020년 감축목표 또는 감축행동을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서약(pledge)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동참이라는 정치적 모멘텀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제15차 당사국총회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위해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이 출범하였다. 2012년 상반기부터 ADP 활동을 개시하여 2015년까지 지속함으로써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관련 의정서, 법적수단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결과물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 기간(2013~2020)에 관한 도하 개정(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이 채택하였다. 하지만 1차 공약기간 동안 최대 배출국에 해당하는 미국이 빠지면서 연이어 캐나다, 러시아, 일본도 2차 공약기간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과 같은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하향식이 아닌 해당 당사국들이 제시한 감축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는 상향식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및 결정은 유엔체제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효과성에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 위해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ADP)의 설치를 규정하였다.¹⁾ 신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applicable to all)”이란 문구를 넣음으로써 미국의

1) 제17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1항 2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Also decides to launch a process to develop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through a subsidiary body under the Convention hereby established and to be known a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UNFCCC(2012).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venteenth Session*, <http://unfccc.int/resource/docs/2011/cop17/eng/09a01.pdf> [2014.01.13]

참여를 유도하였고 “협약하(Under the Convention)”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미국은 버드-헤겔 결의안에 의해 개도국의 동참 없이는 그 어떤 기후협약도 비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지만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이라는 문구 삽입으로 불참여의 명분을 상실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은 “협약하”라는 문구는 기후변화협약의 중요 원칙인 차별화된 그러나 공동의 책임과 각국의 능력(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CBDR-RC) 원칙의 지속을 확인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원화된 적용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협약하”와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협약하”와 관련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강성 개도국은 역사적 책임에 입각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은 교토의정서에서 명시한 부속서 체제여야 한다는 반면 미국이 포함된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서 명시한 부속서 체제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신기후체제에서는 새로운 적용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과 관련해서 강성개도국은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것은 하나의 획일화된 원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이원화된 국가군 분류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문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표 1 참조).

표1. 문구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 차

구성	강성개도국	선진국
협약 하 (under the Convention)	새로운 체제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어야 하나,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원칙(CBDR-RC) 및 형평성에 따라 기존의 부속서 체계를 유지한 당사국 간 차별화 적용이 필요함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 준수는 중요하지만, 진화하는 세계정세와 국가별 여건을 반영해 동적인 차별화(Dynamic Differentiation) 적용이 필요함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applicable to all)	모든 당사국에 적용된다는 것은 포괄성(Universality)을 의미하는 것이지 획일화(Uniformit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새로운 체제는 선·개도국을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이분화된 국가군 분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2012년부터 시작된 ADP 회의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그 중에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INDCs가 채택됨에 따라 2014년 ADP 회의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하였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강성개도국이 선진국(부속서 I)은 감축의무를, 개도국(비부속서 I)은 감축행동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신기후체제에서도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선진국은 신기후체제에 모든 당사국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원화된 구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맞섰다. 따라서 감축을 의무와 행동으로 이원화하는 대신 개도국과 선진국의 절충한인 감축기여로 표현하고 그것도 “Nationally determined”이란 문구로 합의한 것이다.

바르샤바 총회에서는 INDCs는 감축기여를 의미하였지만 2014년 3월에 속개된 ADP 회의에서는 INDCs의 범위로 감축뿐 아니라 적응, 이행수단, 투명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이 개도국에 의해 제기되었다. 2014년 6월 ADP 회의를 통해 INDCs의 범위는 감축은 필수요소로 한다는 것에만 당사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2014년 12월에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에 제출할 INDCs와 관련된 제출정보와 2015 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후 “기후행동을 위한 리마요청(Lima Call for Climate Action: 리마 결정문)”이라는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원고는 2014년 신기후체제 협상인 ADP 회의 협상경과를 INDCs와 감축 중심으로 고찰하고 제20차 당사국총회 결정문과 2015 합의와 관련된 비공식문서(Non-paper) 논의과정 및 시사점을 소개하고 2015 협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2. ADP 회의경과

구분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ADP 1	2012.05 독일 본	작업성과 및 달성방법, 감축의욕 상향 방법, 이행수단의 역할,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강화 방법, ADP 구성요소 등 논의
ADP 1 (비공식 회의)	2012.09 태국 방콕	
ADP 1-2 (COP18)	2012.11 카타르 도하	2013년부터는 집중적인 작업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당사국 대표 및 옵저버 기관 등의 폭넓은 참여 장려
ADP 2-1	2013.04 독일 본	두 개의 작업분과는 2015 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요소와 2020년까지 추가적인 감축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 향후 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항 결정
ADP 2-2	2013.06 독일 본	2014년에는 ADP 회의를 1회 이상 열기로 합의, 2014년도 작업계획을 위한 향후 활동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도록 요청
ADP 2-3 (COP19)	2013.11 폴란드 바르샤바	WS1에서는 적응, 감축, 기술, 재정, 역량강화, 투명성을 포함한 2015 합의 내용과 요소에 대해 협의 및 INDCS 준비 시작 및 강화를 당사국들에게 요청하고, 발리행동계획 이행과 2020년 이전 감축의욕 상향을 위한 결정문 채택
ADP 2-4	2014.03 독일 본	WS1에서는 적응, INDCS, 재정·기술·역량배양(이행수 단), 감축의욕 및 형평성, 감축, 행동·지원 투명성, 기타 요소 관련 제반사항, INDCS 준비를 논의하고 WS2에서는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전문가회의(TEM)를 개최
ADP 2-5	2014.06 독일 본	WS1에서는 감축, 적응, 이행수단, 투명성, INDCS, 기타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2015 합의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 WS2에서는 도시 환경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전문가회의를 진행하고, 감축 및 적응을 위한 도시 및 지자체 역할에 관한 포럼을 개최
ADP 2-6	2014.10 독일 본	WS1에서는 감축, 적응, 이행수단, 투명성, INDCS, 기타 요소 등을 2015 합의와 연계해서 논의하고 INDCS 관련 합의문 초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 WS2에서는 PRE-2020에 대한 문제를 2015 합의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합의문 초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

II. 2014년 기후변화협상 결과

1.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INDCs)

2014년 3월, 6월, 10월 세 차례의 ADP 회의를 통해 INDCs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사항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공동의장이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INDCs와 Pre-2020 감축상향과 관련된 결정문 초안을 준비하였다. 2014년 협상에서 확인된 INDCs의 쟁점사항은 <표3>에 정리하였다. INDCs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한 3월 ADP 회의에서는 INDCs에 감축 이외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성개도국의 주장에 선진국이 당황하였다. 6월 ADP 회의에서는 INDCs에 대한 공감대가 큰 틀에서 형성되었지만 결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0월 ADP 회의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국간 (특히 선진국과 강성개도국)의 시각 차이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 계속된 ADP 회의에서는 2014년 11월에 공동의장이 준비한 INDCs 관련 결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논의방식은 공동의장이 준비한 결정문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당사국별로 제안하고 공동의장은 당사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수정안을 모든 당사국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문장별로 수정하는 일반적인 국제협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강성개도국은 INDCs와 관련된 결정문에 CBDR-RC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선진국은 CBDR-RC에 의거한 차별화는 부속서 체제에 의거한 이분법적 국가구분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차별화에서

표3. INDCs 관련 쟁점사항

쟁점사항	주요내용
INDCS의 범위	선진국: 감축만 포함; 최빈국: 감축과 재정; 강성개도국: 감축, 적응, 이행수단
INDCS 제출시기	선진국: 주요경제국은 1/4분기 제출; 강성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원화된 제출시기
INDCS 차별화	선진국: 기여를 자국이 스스로 결정; 중국 및 사우디: 기여 의무, 제출정보에 대한 차별성은 현재 부속서 체계에 의거하여 적용
INDCS 구조 및 주기	INDCs의 순환적인 구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기여의 주기는 5년과 10년 주기 대립
기여의 상향조정	당사국이 제출한 감축기여의 합이 협약의 목표와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하향식 기여 할당

국가능력/상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리마 결정문 3항에서는 협약의 기본원칙인 CBDR-RC를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하였으나 선진국의 의견을 수용하여 “상이한 국가 환경 조건에서(in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하였다.²⁾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INDCs를 논의할 때 기여는 감축기여였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INDCs는 감축기여라고 주장하였다. 최빈국을 대변하여 투발루는 INDCs에 적응이 포함되면 개도국에 보고부담(report burden)을 지울 수 있다는 이유로 주장하면서 적응이 2015 합의에서 감축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진국의 다짐을 촉구하였다. 개도국은

2) *Underscores its commitment to reaching an ambitious agreement in 2015 that reflects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UNFCCC(2014c),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https://unfccc.int/files/meetings/lima_dec_2014/application/pdf/auv_cop20_lima_call_for_climate_action.pdf, [2014.01.13]

재정기여의 경우 부속서 II 당사국이 비부속서 당사국에 공약기간 동안 제공할 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INDCs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선진국은 이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립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재정은 INDCs가 아닌 다년간 지원 프로그램(Multi-year programme)의 형태로 제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리마 결정문 11항과 12항에서는 INDCs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감축기여는 모든 당사국이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적응은 희망하는 당사국이 제출할 수 있지만 재정은 INDCs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였다.³⁾

리마 결정문에 명시된 사전합의에 대한 조항은 2014년 11월에 공동의장이 준비한 결정문 초안⁴⁾에 비해서 그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다. 예를 들면 결정문 초안에는 각 당사국이 기여를 제출하면 제출된 기여의 합이 1.5℃ 또는 2℃ 온도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pathway)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전협의의 한 방법으로 당사국이 제출한 기여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홈페이지에 특정기간 동안 공개하여 다른 당사국을 포함한 NGO들이 특정 당사국의 기여에 대한 질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당사국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해진 기한 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합의된 결정문에는 삭제되었다. 따라서 리마 결정문 16항에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각 당사국의 기여를 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된 감축기여의 총량적 효과(aggregate effect)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준비한다고만 명시하였다.⁵⁾

3) 11. *Also agrees* that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y communicate information on strategies, plans and actions for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reflecting their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context of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2. *Invites* all Parties to consider communicating their undertakings in adaptation planning or consider including an adaptation component in their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FCCC(2014c).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https://unfccc.int/files/meetings/lima_dec_2014/application/pdf/auv_cop20_lima_call_for_climate_action.pdf. [2014.01.13]

4) UNFCCC(2014a). ADP.2014.8.DraftText,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Pre-2020 Climate Action*.

사전협약이 축소된 이유는 INDCs의 범위의 축소와 연계되었다. 선진국은 사전협약이 INDCs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지만 강성개도국은 제19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의하면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INDCs의 제출을 위한 정보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협약에 대한 논의는 제19차 당사국총회 결정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INDCs가 2015 합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19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것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강성개도국도 INDCs에 적응과 재정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달리 말하면 선진국이 주장하는 대로 INDCs가 현재의 중요도를 가지면서 감축만 포함되는 경우 2015 합의에서 감축이 가지는 비중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각 요소 간의 동등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INDCs에서 사전협약의 부분을 간소화하여 INDCs가 2015 합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 INDCs에서 적응이나 재정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협상타결에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INDCs의 사전협약을 간소화하는 조건으로 감축만 필수로 제출하는 것이 합의된 것으로 추측된다.

2. 감축

2014년 3월, 6월, 10월 세 차례의 ADP 회의를 통해 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사항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공동의장이 2015 합의

5) *Requests* the secretariat to:

(a) Publish on the UNFCCC website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communicated;

(b) Prepare by 1 November 2015 a synthesis report on the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mmunicated by Parties by 1 October 2015;

UNFCCC(2014c),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https://unfccc.int/files/meetings/lima_dec_2014/application/pdf/auv_cop20_lima_call_for_climate_action.pdf, [2014.01.13]

결정문 준비를 위한 비공식 문서(non-paper)를 준비하였다. 비공식 문서는 2015 합의에 포함될 일반사항, 감축, 적응,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능력배양,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도적 협의(institutional arrangement)등에 대한 당사국 간의 입장 차이를 대안(option)형식으로 서술하여 의제별로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감축의 경우 감축유형/회계규정의 차별화, 장기목표, 감축기여의 절차 및 사이클, 대응조치 등에 대한 쟁점사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확인하였다(표 4 참조). 2015 합의와 관련된 결정문은 2015년 4월에 초안이 완성되고 5월까지 기후변화협약의 6개 공식어로 번역되어 모든 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감축유형/회계규정의 차별화에 대해서 신기후체제에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를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력과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여 감축유형이나 감축기여와 관련된 회계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는 선·개도국 간 이견이 존재했다.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강성개도국은 선진국은 경제전반에 걸친 절대량 감축목표를 의무적인 감축유형으로 해야 하지만 개도국은 그들의 능력과 상황에 부합하는 감축유형을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도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경우 신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국가의 상황이 감축유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자체적 차별화(self-differentiation)를 통해 감축유형을 선택하고 사전협의 혹은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을 국제사회에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 10월 ADP 회의에서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현재의 이원화된 부속서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협약전반과 관련해서 차별화를 기술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빈국을 대표해서 투발루는 부속서 체제의 다원화를 주장하는 등 신기후체제에서는 기존 부속서 중심의 이원화 체제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표4. 감축 관련 쟁점사항

쟁점사항	논의 내용
감축유형 혹은 회계규정 차별화	강성개도국: 부속서체제에 의거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화; 선진국: 자체적인 차별화 후 국제사회에 설명
장기목표 설정	개도국: 탄소예산을 당사국에게 할당; 선진국: 할당 방법론의 부재 및 협상지연 등으로 할당 반대
기여주기 및 절차	미국, 최빈국, 군소도서국: 5년 주기 지지; 유럽연합, 일본, 우리나라: 10년 주기 지지
감축기여 조건성	개도국: 감축기여는 이행수단의 지원이 선행; 선진국: 감축기여는 무조건성이고 이행수단 지원 후 감축상향 별도 제출
회계규정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부속서 체제에 의거한 이원화; 선진국: 공통회계규칙

기존 이원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속서와 비부속서에 속하는 당사국만 새로 정의한다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으로써 부속서 당사국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별화의 논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장기목표 설정과 관련된 논의는 IPCC 5차 보고서⁶⁾ 발표 이후 개도국을 중심으로 탄소예산을 당사국에 할당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 2℃의 온도목표를 지키기 위한 탄소양을 근거로 하여 소비수준을 지역적으로 할당하여서 아시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을 계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적 협력구조를 강조하였다. 개도국은 IPCC의 이러한 노력에 한발 더 나아가 개도국은 탄소예산을 당사국에게 배분하자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2014년 11월 공동의장의 비공식 문서에 하나의 대안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선진국은 탄소예산의

6) IPCC(2014),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할당방법이 부재하고 할당방법에 대한 논의는 자칫 정치적인 논의로 발전하여 협상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감축기여의 절차 및 사이클은 감축기여의 공약기간이나 감축기여를 제출한 다음 절차에 관한 논의로 2014년 6월 ADP 회의에서 공동의장이 INDCs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비록 이것은 INDCs와 관련되지만 INDCs의 중심이 감축이고 감축과 다른 요소 간의 공약기간이 상이해도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감축과 연속선상에서 논의가 지속되었다. 2014년 10월 회의까지 INDCs의 순환성에는 모든 당사국이 공감하고 있지만 기여의 기간은 감축기여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5년 주기와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한 10년 주기가 두 개의 대안으로 제기되면서 당사국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연계하여 중간검토(mid-term review), 사후검토 혹은 평가(ex-post review or assessment), 기여후퇴방지(no backsliding) 등 기여를 제출한 다음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고 기여후퇴방지는 모든 당사국이 원론적인 부분에는 동의를 하였다.

감축은 INDCs와는 달리 2014년 11월 공동의장이 준비한 비공식 문서⁷⁾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듣고 공동의장이 당사국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본을 작성하여 당사국총회 기간에 공개하였다. 공식적인 협상모드가 아닌 쟁점 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수정본이 공개된 후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국 간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4년 ADP 회의를 통해서 강성개도국은 신기후체제는 협약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CBDR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7) UNFCCC(2014b). ADP.2014.InformationNote, *Reflection on Progress Made at the Fifth Part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CBDR-RC 원칙은 현존하는 부속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014년 11월 공동의장이 준비한 비공식 문서에는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CBDR-RC 앞에 “진화”를 의미하는 “evolving”이란 형용사를 넣어서 “evolving CBDR-RC”로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서 다수의 개도국은 CBDR-RC 앞에 “evolving”을 넣는 것은 협약을 다시 쓰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선진국은 협약이 처음 출범하였을 때와 현재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 이를 신기후체제에서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evolving”이란 형용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의장이 준비한 수정된 비공식 문서에도 여전히 “evolving CBDR-RC”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2월 ADP 회의에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CBDR-RC의 활용과 관련된 강성개도국과 선진국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강성개도국은 주로 CBDR만 언급할 뿐, CBDR-RC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이유는 각자의 능력을 대변하는 RC가 강조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등 부유한 산유국은 다른 최빈국이나 군소도서국과 달리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BDR-RC에서 특히 RC가 강조되면 교토의정서에서처럼 책임회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하에 전략적으로 CBDR만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선진국은 이들이 주장하는 “evolving”의 개념은 RC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BDR-RC에 “evolving”을 삽입하려는 움직임은 다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역사적 책임을 빌미로 선진국의 지원을 강조하는 강성개도국을 겨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CBDR-RC의 이론적 논의는 신기후체제에서 감축과 관련된 차별화의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부속서 체제에 의거한 감축유형, 회계규정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차별화를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심적 차별화(concentric differentiation)를 20차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동심적

차별화는 국가별로 감축유형의 차별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부속서 I 당사국은 경제전반에 걸친 절대량 감축목표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능력이 부족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해 부정적 영향은 큰 군소 도서국이나 최빈국은 정책이나 계획에 의한 감축목표 제출을 권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최빈국이나 군소도서국이 아닌 비부속서 당사국은 경제전반에 걸친 절대량 목표를 감축목표로 제출해도 되지만 경제전반에 걸친 상대량 목표(BAU, intensity, per capita)를 감축목표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신기후체제에서는 INDCs의 순환적 구조로 감축기여가 갱신되기 때문에 당사국의 감축유형이 진화하여 중국에는 모든 당사국이 경제전반에 걸친 절대량 목표를 감축목표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회귀하는 것이 동심적 차별화의 핵심이라고 소개하였다.⁸⁾

비록 동심적 차별화가 기존의 차별화 방식에서 진일보했고 이 방법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이 방법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다. 첫째, 감축유형을 차별화의 방법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어떤 감축유형을 선택하는지는 기존의 부속서 체제에 의거해 결정되기 때문에 차별화를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둘째, 다수의 당사국은 경제전반에 걸친 절대감축목표가 바람직한 이유는 상호비교가 용이할 뿐 아니라 기여의 합을 온도목표와의 비교가 쉽기 때문에 감축목표의 투명성이 증진된다는 것이고 이는 절대량 목표가 상대적 목표에 비해 감축상향 측면에서는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 감축유형의 진화를 유도할 기술적인 방법으로 지표 설정하여 당사국이 특정 지표의 수치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절대량 감축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하향식 방법과 절대량 감축목표로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의존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8) Brzail(2014), *Views of Brazil on the Elements of the New Agrgeement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http://www4.unfccc.int/submissions/Lists/OSPSubmissionUpload/73_99_130602104651393682-BRAZIL%20ADP%20Elements.pdf, [2014.01.13]

제 20차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예산을 당사국에 할당하지는 것이 장기목표와 설정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개도국의 주장에 선진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전의 감축기여보다 하향된 감축기여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감축기여후퇴방지(no backsliding)와 관련해서 모든 당사국이 공감을 표명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감축기여후퇴방지가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교토의정서하 감축의무를 제출한 당사국에게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 또한 감축기여후퇴방지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감축유형도 감축기여후퇴방지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감축유형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별 진화를 설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축기여후퇴방지의 조건 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전반에 걸친 상대적인 감축목표의 경우 이전이 목표와 비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축기여후퇴방지를 감축절대량으로 설정할 것인지 감축률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감축기여 주기와 관련되어서 5년 주기를 주장하는 당사국의 의견과 10년 주기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당사국의 다양한 국가여건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국내 에너지 계획/정책과의 연계 등을 감안해 매 10년 단위의 기간 설정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감축기여 효과성 증진을 위해 감축기여 시작 5년 후 중간 검토를 제안하였다. 긴 공약기간에 대한 효과성은 교토의정서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중간점검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5년 단위의 감축기여 기간이 감축기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재안으로 브라질은 5년 단위의 확정적 기여와 10년 단위의 예시적 기여(indicative contributions) 제시를 제안함으로써 5년과 10년 주장 간 타협점을 찾고자 시도하였다.⁹⁾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5년 단위로 기여를 확정하는 것에 더하여 10년 단위의 기여 제출

9) Brzail(2014). *Views of Brazil on the Elements of the New Agreement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http://www4.unfccc.int/submissions/Lists/OSPSubmissionUpload/73_99_130602104651393682-BRAZIL%20ADP%20Elements.pdf, [2014.01.13]

까지 미리 요구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5년 단위 기여만 제출할 때보다도 더욱 엄격한 기여 제출 요구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당사국 간 감축기여 주기가 달라도 된다는 주장과 당사국 간 감축기여 주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도 확인되었다. 중국은 감축기여 기간 설정에 있어서도 선·개도국 간 차별화를 주장하였는데 선진국의 경우 5년 단위의 기여 설정을 주장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종료 시점(end date)이 다양해도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는 선·개도국 간 상이한 기간 설정에 반대하면서 모든 당사국이 공통된 감축기여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III. 제20차 당사국총회 시사점 및 2015년 협상전략 제언

INDCs와 관련해서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지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초석을 다졌다는 면에서 제20차 당사국총회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협상에서 중요한 2015년에 모든 당사국이 INDCs를 제출함으로써 기후변화협상을 이어가는 모멘텀을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INDCs에 대한 합의는 제20차 당사국총회 전에 미국과 중국의 합의와 함께 신기후체제에 미국과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신기후체제 출범 가능성을 증진시켰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와는

반대로 감축기여와 관련된 사전협의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각 당사국이 야심찬 감축기여를 제출할 이유가 적은 현실을 고려하면 INDCs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제20차 당사국총회는 전반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INDCs에 대한 합의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 2015 합의와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미진하였다. 제20차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 공개된 비공식 문서를 보면 거의 모든 쟁점사항을 대안으로 처리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다양한 입장을 확인하였다. 입장이 확인된 쟁점사항과 함께 사전협의, 감축기여후퇴방지, 기여의 주기 및 절차 등 2014년에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된 INDCs뿐만 아니라 2015 합의와 관련한 많은 사항들이 결정문에 제외됨으로써 2015년 협상 회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4년 기후변화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첫째, 2015년에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INDCs의 제출이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리마 결정문에 INDCs의 제출시기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준비된 당사국(countries in a position to do so)은 1/4분기에 제출하라고 명시되었고 2014년 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주요경제국의 경우 1/4분기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게 조기제출을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만일 1/4분기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2015년 10월 1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하는데, 리마 결정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 하여금 당사국들이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한 INDCs를 바탕으로 감축기여의 총체적 효과에 관한 종합보고서(a synthesis report on the aggregate effect)를 11월 1일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제출일자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상반기에 국내사정으로 INDCs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INDCs를 제출하지 못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미제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해명요구에 우리나라가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수행할 수 있는 적응 관련 노력을 호소하여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노력의 진정성을 호소한다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선진국은 적응 및 다른 분야에 대한 노력이 감축 노력을 상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 노력에 대한 호소는 우리나라의 이미지 실추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하고 이를 통한 감축 기여의 경감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면서 경제규모로도 선진국에 가깝고 온실가스 배출규모도 큰 편에 속한다. 따라서 부속서체제가 개편이 되면 부속서I에 속하는 당사국의 개편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부속서I 당사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속서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성의 기술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지하는 자체적 차별화가 2015 합의에 반영될 수 있는 보완책을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체적 차별화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자체적 차별화가 적용되면 현재 국제사회에 자신의 감축목표가 적정하고 합리적인지 설명하는 협의과정에서는 야심찬 감축목표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2°C 온도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예시: 사전협의 절차에서 야심찬 감축목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필요시 우리나라가 속한 환경건정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과 연계하여 국가제안서 형태로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서 INDCs가 순환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여주기에서 다음 기여주기로 넘어갈 때 기여후퇴금지(no backsliding)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기여후퇴금지가 어떤 형식으로 2015 합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여후퇴금지를 지지하는 이유를 당사국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강성개도국의 경우 기여후퇴금지를 현재 지지부진한 교토의정서하 감축상향과 연계하여 이러한 선진국을 질책하면서 신기후체제협상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여후퇴금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 기여후퇴금지의 범위는 기여후퇴가 감축기여 이외 적응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여후퇴금지의 범위(예시: 감축 유형, 감축목표량(상대적 목표 혹은 절대량), 정책적 노력의 포함여부, 포함된다면 이에 대한 기준)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기여후퇴금지의 기준선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브라질의 경우 기여후퇴금지는 교토의정서하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부과되는 것이 법적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기여후퇴금지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을 두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된 부분을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여후퇴금지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홍보할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감축장기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탄소예산의 총량적 활용법을 개발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도국이 주장하고 있는 탄소예산을 당사국에게로 할당하는 방법은 방법론의 부재와 이러한 논의가 정치적 쟁점화가 되어 협상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탄소예산을 총량적으로 활용하면 추상적인 온도목표보다 구체적인 감축이행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당사국의 경각심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현재의 노력은 2100년 3℃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보다 현재까지 2100까지 2℃ 목표를 지키기 위한 탄소예산의 75%를 소진했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예산을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당사국의 감축상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이러한 방법을 국가제안서 형태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축기여의 주기와 관련해서 10년과 5년 주기 주장 간의 타협방안으로서 우리나라는 브라질의 제안을 조정하여 10년 단위의 확정적 기여와 5년 단위의 예시적 기여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0년 단위 기여 설정에 반대하는 당사국들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10년 단위 기여 설정에 우려를 표명하는데, 이를 감안해 2030년에 대한 확정적 기여를 설정하는 대신 2025년에 대한 예시적 기여도 함께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2030년까지 15년이라는 시차를 향한 우려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시적 기여 수치를 매 5년 단위의 중간 검토(mid-term review)를 위한 일종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10년 단위 기여의 실질적 이행 견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간 점검 시 예시적 수치와 실제 달성치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10년 기여의 달성을 향한 배출경로(pathway) 상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10년 단위의 기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여에 해당한다면, 5년 단위 기여는 고정된 목표라기보다는 참고를 위한 일종의 예시적 수치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견인에 일조하지만 준수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지닌다.

종합하면 2015년은 신기후체제를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해이고 앞서 언급된 부분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만 2015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대응방안을 마련에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 성급한 대응방안 개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만일 2015년에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의정서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2015 합의와 관련된 원칙을 원론적인 부분에 정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응해야 하는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Brazil. 2014. *Views of Brazil on the Elements of the New Agreement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http://www4.unfccc.int/submissions/Lists/OSPSubmissionUpload/73_99_130602104651393682-BRAZIL%20ADP%20Elements.pdf. [2014.01.13]
-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UNFCCC. 2012.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venteenth Session*. <http://unfccc.int/resource/docs/2011/cop17/eng/09a01.pdf>. [2014.01.13]
- _____. 2014a. ADP.2014.8.DraftText,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Pre-2020 Climate Action*.
- _____. 2014b. ADP.2014.InformationNote, *Reflection on Progress Made at the Fifth Part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_____. 2014c.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https://unfccc.int/files/meetings/lima_dec_2014/application/pdf/auv_cop20_lima_call_for_climate_action.pdf. [2014.01.13]

<http://www.kei.re.kr>